

청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가단50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3. 1. 1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2. 7. 22. 접수 제157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8. 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2022.

7. 22. 각 2022. 7. 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은

2023.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중증치매 상태였고, 금식상태에서 수액과 영양제를 공급받았으나 부종이 심해져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는 등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이 2017. 6. 28.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9. 6. 1.부터 2022. 3. 11.까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 ㉡ 망인이 2020. 10. 19.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m-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중증 치매환자(MMSE 10점 미만)에 해당하는 9점을 받았고, 2021. 11. 3. MMSE 검사결과에서도 8점을 받은 사실, ㉢ 망인이 2022. 6. 20. D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증여일 4일 전에는 금식상태에서 수액, 영양제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부종이 심해지는 등으로 그 상태가 저하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D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인 2022. 6. 17. 직접 이 사건 증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당시 및 등기신청 당시 망인의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의사표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각 증여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유류분 침해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생존 중에 망인을 보살피면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장례식장 비용과 삼우제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합계 32,353,594원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

1)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별도의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고,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바,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각 1/4 지분($1/2 \text{ 지분} \times 1/2$)만큼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 1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